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81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서윤기,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포용해 공생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가족 구성 시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나.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사회적 가족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다양한 가구 구성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사항과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가구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족의 정책과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족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2인 동거 사회적 가족”이란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을 말한다.
3. “주거공동체 사회적 가족”이란 협동조합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을 말한다.
4.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이란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족의 소속감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적 가족을 말한다.
5.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  
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가족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  
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가족이 복지서비스와 공적 자원에  
대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주거공동체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  
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족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사회적 가족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
3. 사회적 가족의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종합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

유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회적 가족의 정책 참여) ①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시정 및 의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의 복지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가족·보건의료 정책)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족에게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거복지 정책)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족에게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같

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3. 임대주택 공급
4. 그 밖에 시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

제13조(등록) ① 모든 시민은 시의 복지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위하여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가족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알 권리) 시장은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한 시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족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
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로서의 권리
3.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언방식 및 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4. 그 밖에 사회적 가족으로서 보장되는 권리와 지원 사업

제15조(차별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가족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16조(인권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복지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2400000020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권수정 의원  접수일 : 2021.05.24 회신일 : 2021.05.24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내용문의 : 02-2180-7942
--	---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8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지원) 등에서 시장이 사회적 가족의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관련 사업을 진행한 선례를 구하기 어렵고 사회적 가족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0,000천원으로 연평균 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하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타 분야 실태조사 비용 준용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실태조사 (조례안 제8조)	30,000	-	-	-	-	-	30,000
	소계(b)	30,000	-	-	-	-	-	30,000
□ 총 비용(b-a)		30,000	-	-	-	-	-	30,000

○ 사회적 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

- 사회적 가족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 비용  
= 30,000,000원 × 1회(5년주기)  
= 30,000천원
  -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21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50,000천원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
  - 노숙인실태조사 68,04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